

[사 건 명] 행심 2017 - 8

학교폭력 재심결정 의무이행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처분한 ‘재심결정’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호와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이행하라.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으로, 사건 당시 청구인과 가해학생 ●●●은 5학년 재학 중인 같은 반 학생이었다.
- 나. 가해학생 ●●●은 2016. 7. 22. 청구인외 2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2016-2 접수), 2016. 8.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학급교체, 특별교육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19. 인천광역시교육청■■■■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0.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다. 한편, 청구인의 부(父)는 2016. 9. 8. 위 ●●●도 청구인에게 가해한 사실이 있지만 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학교폭력 사안 접수 요청을 하였으나, 동일 사

- 가. 이 사건 가해학생(●●●)은 2016. 6.경부터 청구인외 2명에게 약 1개월가량 괴롭힘을 당하였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2016. 8.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서면사과 및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 중한 조치를 받았고, 청구인 또한 ●●●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동일사안으로 재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청구인만 일방적인 가해자 처분조치 하였다.
- 나. 청구인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개최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에게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분조치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제2차 피청구인의 조치 ‘학교폭력 아님’에 대하여 그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 심의결과 ●●●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며 지역위원회에서 2016. 12. 16.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각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재심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강제성이 없는 결정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원회에 전화 및 대면 문의를 하였고, ■■■위원회의 결정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내린 결정이라 하였고, 그렇다면 하위청인 피청구인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마.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지역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기속력 있는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이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다.

나. ○○○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한 번 한 것과, 세 차례 정도 종이를 구겨서 청구인에게 던진 것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쪽지를 먼저 준 것은 청구인이었고 이 과정에서 ○○○도 욕을 했다는 목격진술이 있으며 ○○○의 행동은 이에 대한 대응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아님」으로 결정하게 된 취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전담기구 혹은 소속 교원에 의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포괄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이루어 지는데 ◇◇◇2016-04 사안은 원칙적으로 ◇◇◇2016-2 사안과 동일 사안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심의대상 아님」으로 처분하였으며, ◇◇◇2016-04 사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학교폭력 피해 내용인 수업시간에 의자에 비스듬히 앉거나, 팔을 뒤로 해서 뒷좌석 학생과 짝의 책상에 올려놓고 책을 보거나, 의자를 까딱까딱 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워 수업을 집중하기 힘들다는 것은 ○○○의 신체적인 문제(거북목, 오자다리, 골반 틀어짐으로 치료받고 있음)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학교 생활규정으로 충분히 담임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폭력 등 원인으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8~9월에 복통에 따른 결석과 조퇴를 5차례 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복통을 호소하고 치료받기 시작한 시기가(8. 13. 입원치료, 8.19. 결석, 8. 22., 8.25., 9.6., 9.9. 4회 조퇴) ○○○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쪽지를 줬는데 이를 무시하거나 구겨서 얼굴에 던지거나 욕을 해서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시기(7월)와 일치하지 않는다.

마. ○○○○○○○○○○○○○○○○○○○위원회는 애매모호한 답변서를 받고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추가 질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직접 유선으로 통화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됨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이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청구인과 다른 2명의 학생들이 ○○○에 대한 집단적으로 괴롭힘이 있었고, ○○○이 청구인에게 한 행동은 괴롭힘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에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결정 한 것으로 재심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 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제17조 제1항

2. 판 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욕설과 쪽지 던짐 사안과 빼뜯어진 자세와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한 사안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7. 1.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처분한 것은 ○○○○○○○○○○○○○○○○○○○위원회가 2016. 1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6조 제1항 각호와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라는 재심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해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즉,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원회 재심결정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와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처분조치를 하여야 하나, “학교폭력 아님” 이라는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재심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원회 재심결정서 상 재심결과를 보면 결정취지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조치를 요청” 이라 되어 있고, 내용란에는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본 사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함” 이라 되어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새로 개최하여 이 사건 사안을 심리하여 학교폭력인지 사실관계를 확정된 후 위 법 제16조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아무런 심리 없이 위 법 제16조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위원회에 위 재심결정의 취지를 질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위 지역위원회로부터 위 법 제16조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피청구인이 취하라는 취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반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4호증 ■■■■■■■■■■■■■■■■■■■■■위원회의 “재심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에도 「심의 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재조치를 요구한 사안”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타당성,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재심결정의 취지는 이 사안을 심리하여 학교폭력인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학교폭력에 해당될 경우 위 법 제16조, 제17조의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심리한 후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내린 것은 위 재심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학교폭력 아님”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한 자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것이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행정심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V. 결 어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아닌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심판대상 적격이 없으며, 아울러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